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
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일부 조항이 개정('11. 6.30) 및 시행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·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확대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
- 유효기간 연장
 -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

4. 관련근거

-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, 제13조의3
- 기 타 :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-14727(2011.7.1)호에 의거
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정비 통보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일부 조항이 개정(11. 6.30) 및 시행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·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사항으로,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며,
-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써,
-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, 소상공인 간 상생 공존의 여건조성으로 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